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31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법령에 신설된 사무를 위임사무에 신설

- 소독업에 관한 사무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사무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

나.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

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근거 법률명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법률과 일치

-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 「노인복지법」 → 「기초노령연금법」
- 「전염병 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4. 2. 13. ~ 3. 5.(제출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 법령
- 4) 2014년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3.18)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4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위 임 사 무(제5조제1항 관련)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1. 의료급여증 회수 2.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장애진단의뢰 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같은 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나. 기초노령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다. 미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4.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동 장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 같은 법 제62조	
	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 나. 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83조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검진 및 역학 조사 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보건소장
	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결핵예방접종 등 나. 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다. 입원 명령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결핵예방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나. 건강기록부의 관리 다. 보고지시, 출입, 검사 등 라. 시정 명령 마.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청문 바.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사. 과태료 부과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27조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 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라.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제2항	보건소장
	마.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사.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8. 의료지도원의 배치	○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	
	9.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나. 시술소의 폐업·휴업신고 처리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건소장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4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11.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제82조	
	다. 시술소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2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제84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제84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개설등록 수리</p> <p>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p> <p>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p> <p>○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p> <p>○ 같은 법 제15조</p> <p>○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p> <p>○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보건소장
	<p>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개설 등록</p> <p>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p> <p>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p> <p>○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p> <p>○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p>	
	<p>14.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p> <p>나.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p> <p>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p> <p>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p> <p>마. 보고와 검사 등</p> <p>바. 업무개시 명령 등</p> <p>사. 폐기 명령 등</p> <p>아. 개수명령</p> <p>자.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p>	<p>○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p> <p>○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p> <p>○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6조</p> <p>○ 같은 법 제23조 제2항</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0조</p> <p>○ 같은 법 제71조</p> <p>○ 같은 법 제74조</p> <p>○ 같은 법 제75조</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차.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78조	보건소장
	카. 약사 감사원의 임명 및 배치	○ 같은 법 제80조	
	다.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제81조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사. 청문	○ 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 같은 법 제40조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49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p> <p>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증명서발급</p> <p>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수리</p> <p>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p> <p>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지도·감독</p> <p>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p> <p>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 등, 청문</p> <p>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p> <p>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p> <p>다. 지도·점검</p> <p>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p> <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p>	<p>○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p> <p>○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p> <p>○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p> <p>○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p> <p>○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16조</p> <p>○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p> <p>○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제68조</p> <p>○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p> <p>○ 같은 규칙 제9조</p> <p>○ 같은 규칙 제11조</p> <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p>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p> <p>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업무개시 명령 등</p> <p>마. 폐기 명령 등</p> <p>바. 개수명령</p> <p>사.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p> <p>아. 허가증 등의 갱신</p> <p>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p> <p>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p> <p>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p>	<p>○ 「약사법」 제45조제1항</p> <p>○ 같은 법 제45조제5항</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0조</p> <p>○ 같은 법 제71조</p> <p>○ 같은 법 제74조</p> <p>○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p> <p>○ 같은 법 제80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p> <p>○ 같은 법 제81조</p> <p>○ 같은 법 제98조</p>	보건소장
	<p>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p> <p>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p> <p>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p> <p>라. 폐기 명령 등</p> <p>마. 등록 취소, 청문</p> <p>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p> <p>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p> <p>○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1조</p> <p>○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p> <p>○ 같은 법 제78조</p> <p>○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p> <p>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p> <p>다. 시정 명령</p> <p>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p> <p>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p> <p>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p> <p>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p> <p>나. 청문</p> <p>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p>	<p>○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p> <p>○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p> <p>○ 「의료법」 제63조</p> <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p> <p>○ 같은 법 제50조</p> <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의제2항</p> <p>○ 같은 법 제56조</p> <p>○ 같은 법 제57조</p>	보건소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u>구청장</u>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 <u>제104조에 따라</u> ----- -----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 ----- ----- ----- -----.</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의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위임사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2.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보호법 제8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동장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삭 제> 1.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장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4. 경로연금 지급 신청 관련 사항 가. 경로연금지급의 신청접수 (단, 경로연금 지급은 제외)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경로연금 지급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노인복지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동법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나. 기초노령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다. 미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소	1.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나.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의 명령 다. 정기 예방접종 실시 라. 임신 예방접종 실시 마. 예방접종의 공고 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사.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보관 아.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 접수처리 자. 격리수용 의료기관등 장소 지정 차. 제1군 전염병 환가(患家)에 대한 방역조치 카. 소독조치 타. 소독업무의 대행조치 파. 예방접종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2 ○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동법 제11조 ○ 동법 제12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동법 제37조 ○ 동법 제4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동법 제40조의2 ○ 동법 제21조제2항 및 제56조의2 ○ 동법시행령 제21조	보건소장	보건소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 같은 법 제62조	보건소장
	<신설>				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현 행				개 정 안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소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 나. 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83조	보건소장
	2. 기생충 예방을 위한 다음 사무 가.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 나. 기생충 감염원의 관리	○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 동법 제6조			<삭 제>		
	<신 설>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검진 및 역학 조사 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업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업기관
보건소	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라. 환자의 취업제한 마. 입원명령 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결핵예방법 제15조 ○ 동법제18조 ○ 동법제19조 ○ 동법제23조 ○ 동법제25조 ○ 동법제29조 ○ 동법제43조	보건소장	보건소	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결핵예방접종 등 나.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다. 입원 명령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 「결핵예방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보건소장
	<신 설>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나. 건강기록부의 관리 다. 보고지시, 출입, 검사 등 라. 시정 명령 마.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부과, 청문 바.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 사. 과태료 부과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27조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기관
보건소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보건소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의 개설 신고수리	○ 의료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리	○ 동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의원등의 폐업·휴업의 신고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 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의원등의 업무개시 명령	○ 동법 제48조제2항			라.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제2항	
	마. 의원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동법 제49조			마.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바. 의원등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사. 의원등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사.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아. 의원등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 동법 제5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자. 의원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1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현 행				개 정 안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10.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인정 나. 폐업 및 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양수신고 수리 라. 업무사항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4항 ○ 동시행규칙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호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장	보건소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 등록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보건소장
	1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다. 지도·점검	○ 의료법 제17조제1항, 제2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제5항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8조			17.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폐업신고 수리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 다. 지도·점검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11조	

현행				개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소	15. 의약품유통관리 기준에 관한 다음사무 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적격업소 사후 관리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 항별표 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보건 소장	보건소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7호 관련 [별표6]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	보건 소장
	<신 설>				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 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사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신 설>		보건소장	보건소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와 통보 수리 및 등록 대장 관리 다. 시정명령	○ 「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 「의료법」 제63조	보건소장
	<신 설>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신 설>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